

[사 건 명] 행심 2019 - 36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15일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출석정지 15일, 사회봉사 5일,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출석정지 10일, 사회봉사 5일,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01. 0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15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 학생으로 같은 학교 ○○○, □□□과 함께 2018년 1학기부터 있었던 피해학생 ●●●, ◆◆◆에 대한 이 사건 학교폭력에 관하여, 2018. 12. 2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가 개최되어, 그 결과 피청구인은 2019. 1. 7. 청구인에게 『출석정지 15일, 사회봉사 5일,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조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19. 2. 18. 이 사건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 및 ○○○, □□□이 행한 패드립 및 성과 관련된 저속한 랩, 여성 비하성 발언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반 남학생들끼리 쉬는 시간 등에 웃음을 주고자 한 것으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또래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흔히 행해지는 언행들로서 같은 반 남학생들 모두 동참하여 주고받은 것이고, 피해학생인 여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성희롱이나 성적 추행 행위 같은 가해 행위는 없었음.

나. 또한 청구인은 중학생 시절 품행이 방정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모 역시 양육에 각별히 유념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과 이념, 이 사건 청구인의 학교폭력의 내용, 청구인의 학교폭력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아닌 점, 청구인이 아닌 다른 학생들도 같은 행위를 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청구인과 보호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치가 확정되어 학적부에 기재될

경우 청구인이 향후 취업이나 진학 등에 있어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치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조치로 입게 될 청구인의 사익침해의 정도가 너무 커 이 사건 조치는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 부당한 조치임.

- 라. 학교폭력을 행한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학급교체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위의 다른 조치를 통하여 청구인의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와 청구인의 선도를 병행함이 보다 상당함.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여학생들에 대해 직접적인 성희롱이나 성적 추행 행위 같은 가해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성과 관련된 랩이나 여성 비하성 발언은 직접적으로 여학생들에게 하지 않았어도 여학생이 같은 교실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요즘 사회적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성희롱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있음.

-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은 2018.05.28.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부적절한 휴대폰 사용으로 학교내봉사 5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다. 청구인은 같은 반 다른 남학생들도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남학생들은 처음에 같이 어울려 같은 행위를 하였을 지라도 여학생들이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학교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을 때 이를 공감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청구인은 2학기 되어서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여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었음.

라. 피해학생들이 청구인에게 반성하고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지 못하고 같은 행위를 다시 시작하여 피해를 주었으므로 학폭위에서 내린 조치는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정당한 조치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근거 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구술 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및 ○○○, □□□은 2018년 1학기 때부터 여학생들과 교실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남학생들끼리 일명 패드립을 하고, 성과 관련한 저속한 랩을 하였으며, 여성 비하성 발언을 함. (여학생은 소수이고 남학생은 다수임)

나. 피해학생들이 2018년 1학기 말에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여 2학기 초에 잠시 잠잠하였으나, 다시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패드립과 성드립이 반복되었음.

다. 이에 피해학생들은 2018. 12. 18.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 함.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 ○○○, □□□ 및 피해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청구인이 ○○○, □□□과 함께 부모나 학교교사를 소재로 패드립을 하거나 성과 관

련된 저속한 랩, 여성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학생들로 하여금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 언어적 폭력에 해당한다.

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폭위에서는 심각성 보통(2점), 지속성 높음(3점), 고의성 보통(2점), 반성정도 낮음(3점), 화해정도 보통(2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총점 12점으로 5호 출석정지에 해당한다.

학폭위에서는 심각성에 관해 ○○○(패드립 및 성드립 내용이 입에 담기 민망한 내용이라며 심각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직접 피해학생들에게 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하여 보통으로 판단)과 비슷하다고 보아 보통으로

판단하였다. 지속성에 관해서는 1학기 때부터 2학기 때까지 이어져 온 점을 들어 높음으로 판단하였다. 고의성에 관해서는 남학생들끼리 했다고 하나 같이 있는 여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들어 보통으로 판단하였다. 반성정도에 관해서는 학폭위에서의 청구인의 진술 태도에 비춰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 같으며 없음 의견도 있었으나 협의에 따라 낮음으로 판단하였다. 화해정도에 관해서는 피해학생들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낮음 의견도 있었으나 청구인이 피해학생들에게 사과를 한 점을 감안하여 보통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세부적 판단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총점 12점에 해당하는 출석정지 처분 자체는 적법, 타당하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출석정지 처분 외에 사회봉사 처분이 병과 된 점,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학폭위의 취지, 청구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며 청구인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다소 과중하므로 출석정지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감경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것이나, 출석정지 기간이 다소 과중하므로 15일에서 10일로 감경한다.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출석정지 10일, 사회봉사 5일,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 으로 감경한다.